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전남동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11. 2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경고(1명)
직원	견책(2명), 경고(5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가. 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 대출 취급 부적정

- 차주에게 토지를 담보로 가계일반자금대출 취급 시, 「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 대출」에 해당하여 대출비율을 상향할 수 없고, 기본 대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담보물(전, 답)의 기본 대출비율을 상향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

나.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등 소홀

- 여신심사역 심사 소홀
 - 대출비율을 상향한 영업점 의견을 별도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음
-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
 - 상향 대출비율을 적용한 영업점 검토자료 및 여신심사역 심사의견서 등을 별도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4조(용어의 정의),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149조의2(권역 외 소재 담보물 취득시 주의사항), 제151조(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)